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7월 14일

다산면장인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철	김 *철 1977-04-12	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1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03